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68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도종환·김승원·박 정

박찬대 · 양이원영 · 오영환

유정주 • 이규민 • 이상헌

임오경 · 전용기 · 홍정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웹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웹툰"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순 권장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5호의2 및 제9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스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제작되거나 또는 디스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웹툰"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	1
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	
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	
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	
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u>디스크</u> 등 디지털매체에 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긴 것을 말한다.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제작되거나 또는
	디스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	5
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	
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	<u>정보통신망</u>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u>따른 정보통신망</u> 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신 설>

6. • 7. (생략)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 ④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 ④ (생 략) <신 설>

5의2. "웹툰"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로서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u>를</u> 말한다.

6.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표준계 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 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